

대한호신협회 인사위원회 규정



대 한 호 신 협 회

대한호신협회 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26년 1월 10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호신협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의 직원 인사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본회 직원의 채용, 승진, 전보, 포상 및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위원회의 구성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상근 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은 이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간사는 사무총장이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 및 행정 실무를 맡는다.

제4조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(보직 임원)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제척 및 기피)

- ①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
- ② 심의 대상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장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

제6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직원 신규 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
- 2. 직원의 승진 및 승급 심사
- 3.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4.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인사 관련 중요 사항

제7조(소집)

-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인사(징계 등)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의결 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비밀 유지)

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 및 관계자는 회의 중 알게 된 개인정보나 심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4장 심의 절차

제10조(채용 심사)

- ① 신규 채용 시 서류 전형 및 면접 심사의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채용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, 인성,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회장에게 제청한다.

제11조(징계 심의)

- ① 징계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- ②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 (소명 기회 부여)
- ③ 징계의 양정 기준은 별도의 '징계 양정 기준표'에 따른다.

제12조(재심 청구)

- 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,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3조(회의록)

간사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출석 위원, 심의 안건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제14조(운영 세칙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